

감 사 원

징계 ·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법인 서면 세무조사 업무 태만 및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 치 기 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용

1. 사건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하 “연수구 세무조사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이하 “서면조사”라 한다) 대상 법인을 정하여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하는 등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인 서면조사 업무 태만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대상 기간 등을 알리고,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및 제136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장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연수구가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세원누락 방지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시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조사 공무원은 서면조사의 대상 법인을 확정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이 서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장기간 검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서면조사를 엄정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수구 □국 △과²⁹⁾ 취득세담당 지방세무 B은 2015. 8. 21.부터 2018. 3. 4. 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³⁰⁾하였다.

한편, B은 2015. 8. 21.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전임자(지방세무 C)로부터 2014년과 2015년 법인 서면조사 대상 중 조사를 실시한 법인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2014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추진결과 내역”(“2014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추진결과 보고”의 첨부 문서)과 “2015년도 서면조사 추진내역”(엑셀 파일) 등 서면조사 관련 업무자료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전임자가 2015. 3. 31.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받은 “2014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추진결과 보고”(▷과-4201) 문서에는 2014년 총 서면조사 대상 법인 50개 중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25개에 대해서는 2015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2015. 4. 27. “2015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추진”(▷과-6155) 문서에는 2015. 5. 15.부터 같은 해 12. 15. 사이에 ▷▷주식회사 등 46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를 한 후 같은 해 12. 30.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해 4. 29. 시행된 “2015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과-6361) 문서에는 같은 해 6. 5.까지 지방세 서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

29) 2017. 2. 28. 조직개편으로 ▷과는 △과와 세무2과로 분과되었고, ▷과 업무 중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취득세 팀 업무는 △과 소관으로 되었음

30) 2015. 8. 21.부터 2018. 2. 28.까지 취득세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 5. 1. 이전까지는 법인 서면조사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음

었다.

따라서 B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서 등 자료 접수현황, 서면조사 실시·미실시 현황과 서면조사 실시 후 보고 현황 등 서면조사 관련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서면조사서 등 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하여 제출 독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자료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서면조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B은 서면조사 업무를 담당한 이후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2014년과 2015년 서면조사 추진결과 등 업무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서면조사 추진계획이나 결과보고 등 서면조사 관련 문서도 문서등록대장에서 검색해보지 아니하여 [별표] “2014~2015년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 미실시 현황(2015. 8. 21. 기준)”과 같이 2014년 6월과 2015년 4월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한 96개 법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58개나 되는데도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제출 독촉이나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을 제외한 5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B은 2016. 4. 21. 인천광역시(세정담당관)로부터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완료하고³¹⁾ 2015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 법인 중 조사가 미완료된 법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연수구에 요청하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이행 철저 통보” 문서를 받기까지 하였다.

31)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은 연수구가 2015년에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6년 인천광역시에서 서면조사 의뢰를 하자 인천광역시가 중복조사금지 원칙 등의 사유로 연수구가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하였음

그런데도 B은 그 이후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하였고 2017. 5. 1. 서면조사 업무 담당자가 후임자로 바뀔 때까지 약 20개월 동안 2014년과 2015년에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B은 2017. 5. 1. 업무분장이 바뀌어 서면조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2018. 3. 5. 세정담당 업무를 맡을 때까지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포함한 취득세팀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있었는데도 후임 서면조사 업무 담당자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의 현황 파악 및 조치의 필요성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수구가 2014년과 2015년에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도 2018년 4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주식회사 ▶▶ 등 51개³²⁾에 이르고, 그중 주식회사 ▶▶ 등 11개 법인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법인 해산 등으로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위 51개 법인 중 ▽▽주식회사 등 16개³³⁾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수구로 하여금 취득세 등의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한 결과, [표 1]과 같이 주식회사 ▼▼ 등 2개 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265,025,755원을 적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 17,139,610원(가산세 포함)

32) 58개 법인 중 ■■주식회사 등 2개 법인은 인천광역시가 세무조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은 인천광역시의 통보로 연수구가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주식회사는 연부취득 후 계약해지로 지방세를 환급하여 세무조사가 불필요함

33) 2014년도 서면조사 대상 법인 중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회사 등 8개 법인과 2015년도 서면조사 대상 법인 중 부동산 취득유형이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인 법인을 위주로 ▲▲주식회사 등 8개 법인을 선정하였음

이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14~2015년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미 실시 법인 표본조사 결과 추정대상 명세

(단위: 원)

연번	조사대상 선정연도	법인명	납세자번호 (대표이사)	과세물건 종류	과세표준 과소 신고금액	추정세액
1	2015년	□■주식회사	- (D)	건물 (급수시설공사비 등)	8,785,210	431,010
2	2015년	주식회사 ▼▼	- (E)	건물 (인테리어공사비 등)	256,240,545	16,708,600
계					265,025,755	17,139,610

주: □■주식회사는 2018. 8. 10., 주식회사 ▼▼은 2018. 8. 16. 부과 기준으로 추정세액을 산출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B은 2016. 2. 22. ▷과장의 검토와 □국장의 결재를 받아 “201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식회사 등 21개 법인을 서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2017. 5. 1. 서면조사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까지 서면조사 사전통지 등 서면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³⁴⁾하였다.

그 결과 세무조사 통지 후 세무조사 실시·미 실시 법인 간 세무조사의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장기간 세무조사 미 실시로 납세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였다.

3. 법인 서면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준수할

34) 2016년 서면조사 대상 21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인천광역시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4월 말 현재까지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법인은 17개임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세무조사 공무원은 서면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 수립, 조사준비서 작성·보고, 조사내용 서면 복명, 조사결과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공무원은 서면조사를 할 때 「지방세기본법」,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조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세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B은 2016. 4. 21. 인천광역시(세정담당관)로부터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철저히 이행한 후 같은 해 6. 30.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이행 철저 통보” 문서를 받고, 같은 해 7. 6. 위 4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7월 말 위 4개 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수행한 후 같은 해 11. 22. 인천광역시에 지방세 세무조사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B은 위 4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에 임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 수립이나 조사준비서 작성·보고, 조사내용 서면 복명,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서면조사 시 작성한 법인별 신고내용과 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 간의 비교·검토표 등 검토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실제 서면조사를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³⁵⁾, 음향방송장비 등 일부 항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임의로 이를 인정하고 서면조사를 종결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의 취득세 등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2,183,504,224원을 적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 104,829,510원(가산세 포함)이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인천광역시 통보 후 서면조사 실시 4개 법인의 적정신고 여부 조사결과 추정대상 명세

(단위: 원)

연번	조사대상 선정연도	법인명	납세자번호 (대표자)	과세물건 종류	과세표준 누락 또는 과소 신고금액	추징세액
1	2015년	▷▷ 주식회사	- (F)	건물 (공장건설 간접비)	186,790,673	9,338,480
				전동지게차	6,800,000	242,890
				소계	193,590,673	9,581,370
2	2015년	△▲ 주식회사	- (G)	건물 (음향방송장비등)	1,963,911,891	94,014,540
3	2015년	▷▶ 주식회사	- (H, I)	건물 (폐기물처리비등)	26,001,660	1,233,600
계					2,183,504,224	104,829,510

주: ▷▷주식회사는 2018. 9. 10., △▲주식회사는 2018. 9. 3., ▷▶주식회사는 2018. 8. 10. 수시부와 기준으로 추정세액을 산출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5) B은 2016년 7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4개 법인 서면조사를 하였지만 정확한 일자 는 모른다고 함. 또한 취득세 신고서류만 있고 검토서류 등 위 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들이 일체 없음

4. 법인 서면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연수구 ▷과 과장 지방행정 ☆ J은 2015. 8. 21.부터 2017. 2. 27.까지 취득세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서면조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2017. 4. 28.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담당 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수구 세무조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J은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B이 서면조사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4~2015년 법인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2016년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1개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서면조사 미완료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데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J은 “3항 나”의 내용과 같이 B이 2016년 4월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등 4개 법인 서면조사를 하면서 조사준비·결과 복명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서면조사를 종결하고서 작성한 세무조사 이행결과 문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법인 서면조사 업무 담당자 B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인 서면조사 업무 외에도 취득세팀 총괄 및 경정청구 등 지방세 과세불복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적정 기한 내 대응·처리해야 하는 과세불복 업무 등 처리량이 많고, 취득세업무 담당 경험 부족으로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법인 서면조사 업무를 계속 미루게 되면서 법인 서면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구는 감사결과와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서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법인 서면조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 부과·징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연수구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인구수, 주택 수 등의 증가로 ▷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점, B이 취득세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세무조사 증가에 따른 불복청구가 증가하였고, ■□주식회사의 과세불복 청구와 관련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종 승소하는 등 불복청구의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한 점, 취득세담당으로서 일반문서 및 지방세 관련 문서 검토·결재도 많이 하였고, 꾸준히 소송교육에 참석하며 업무수행에 노력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수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세무조사 공무원 1인당 평균 과세건수는 22.3건으로 연수구의 1인당 과세건수 22.9건과 차이가 많지 않은 점, 전임자도 취득세담당 기간(2014. 1. 1.~2015. 8. 20.) 동안 불복·구제 업무를 월평균 0.95건(총 19건) 처리하면서 서면조사 업무는 월 5.45건(총 109건)을 수행한 데 반해 B은 취득세담당 기간(2015. 8. 21.~2018. 3. 4.) 동안 불복·구제 업무를 월평균 1.03건(총 32건) 처리하면서 서면조사 업무는 월 0.12건(총 4건)을 수행한 점, 당초 B이 ■□주식회사의 과세불복 청구 관련 소송수행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했던 점³⁶⁾,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 미실시 법인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않아 서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세무조사를 하지 못한 법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수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법인의 과세불복 업무 처리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많았고, 해당 업무 담당기간 동안 체납차량 압류 등 다른 업무 지원을 위해 20회에 걸쳐 출장을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간과 지식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 미실시 현황이라도 파악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으나 해당 업무 담당 이후 전임자로부터 받은 자료나 내부보고 문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서면조사 관련 업무 현황을

36)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측 소송수행자인 B이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법원을 통해 원고측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인천광역시의 통보에 따라 4개 법인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면서도 세무조사 관련 규정도 숙지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형평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 미 실시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법인 서면조사 업무를 태만히 하고,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한 서면 조사 실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은 법인 서면조사 업무를 담당한 1년 8개월 동안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2014년과 2015년 법인 서면조사 추진결과 등 업무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천광역시로부터 2015년도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 법인 중 조사 미완료 법인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요청받고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서면조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도 숙지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처리하여 지방세를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① 법인 서면 세무조사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B을 「지방공무원법」 제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고(징계)

② 앞으로 법인 서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법인 서면 세무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주의)

④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 중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에 대해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표]

2014~2015년 서면조사 사전통지 후 세무조사 미실시 현황(2015. 8. 21.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번	조사대상 선정연도	법인명 ¹⁾	취득일자	취득신고 금액 ²⁾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서면조사서 제출일	비고 ³⁾
1	2014	주식회사 ▶▶	2012. 6. 26.	12,141	2014. 6. 17.	2014. 7. 7.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2	2014	-	2012. 6. 26.	4,047	2014. 6. 17.	2014. 7. 9.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3	2014	-	2012. 6. 26.	6,071	2014. 6. 17.	-	부과제척기간경과
4	2014	▽▽주식회사	2013. 11. 15.	3,144	2014. 6. 17.	2014. 7. 18.	-
5	2014		2012. 11. 15.	2,001	2014. 6. 17.	-	부과제척기간경과
6	2014	-	2013. 10. 11.	14,098	2014. 6. 17.	2014. 7. 16.	-
7	2014	-	2013. 10. 17.	137,741	2014. 6. 17.	-	-
8	2014	-	2013. 7. 15.	3,976	2014. 6. 17.	-	-
9	2014	-	2013. 12. 2.	108,480	2014. 6. 17.	-	외투법인 100% 감면
10	2014	-	2013. 10. 15.	404,957	2014. 6. 17.	-	2016년 5월 해산
11	2014	-	2013. 2. 26.	138,373	2014. 6. 17.	2014. 7. 14.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12	2014	-	2013. 11. 29.	203,789	2014. 6. 17.	-	신탁 100% 비과세
13	2014	-	2012. 11. 30.	61,964	2014. 6. 17.	-	부과제척기간경과
14	2014	-	2013. 2. 27.	5,236	2014. 6. 17.	확인 불가 (담당자퇴사)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15	2014	-	2013. 4. 1.	4,607	2014. 6. 17.	-	2016년 인천광역시 조사
16	2014	-	2013. 10. 1.	5,292	2014. 6. 17.	2014. 7. 16.	서류 미등록
17	2014	-	2013. 9. 16.	4,883	2014. 6. 17.	-	-
18	2014	-	2011. 10. 20.	4,609	2014. 6. 17.	2014. 7. 18.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19	2014	-	2012. 12. 31.	1,591	2014. 6. 17.	확인 불가 (담당자퇴사)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연번	조사대상 선정연도	법인명 ¹⁾	취득일자	취득신고 금액 ²⁾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서면조사서 제출일	비고 ³⁾
20	2014	-	2011. 12. 30.	1,089	2014. 6. 17.	2014년 7월	서류 미등록 부과제척기간경과
21	2014	●●주식회사	2012. 9. 7.	809,400	2014. 6. 17.	-	납세자 연부취득 계약해지로 환급
22	2015	▷▷주식회사	2014. 1. 8.	65,499	2015. 4. 29.	2015. 6. 5.	2016년 인천광역시 통보로 실시
23	2015	▲▲주식회사	2014. 5. 30.	1,372	2015. 4. 29.	2015. 6. 29.	-
24	2015	□■주식회사	2014. 3. 17.	1,795	2015. 4. 29.	2015. 6. 5.	-
25	2015	-	2014. 8. 19.	6,188	2015. 4. 29.	-	신탁 100% 비과세
26	2015	-	2014. 8. 1.	209,173	2015. 4. 29.	2015. 6. 1.	-
27	2015	-	2013. 7. 19.	1,554	2015. 4. 29.	2015. 6. 3.	-
28	2015	-	2014. 3. 28.	3,203	2015. 4. 29.	2015. 5. 26.	-
29	2015	-	2014. 9. 29.	129,200	2015. 4. 29.	-	신탁 100% 비과세
30	2015	-	2014. 3. 11.	288,708	2015. 4. 29.	2015. 6. 4.	-
31	2015	-	2014. 12. 29.	5,258	2015. 4. 29.	2015. 6. 5.	-
32	2015	-	2014. 7. 30.	39,905	2015. 4. 29.	2015. 6. 5.	-
33	2015	-	2014. 11. 28.	131,335	2015. 4. 29.	2015. 5. 8.	-
34	2015	-	2014. 8. 29.	332,451	2015. 4. 29.	2015. 6. 5.	-
35	2015	-	2014. 11. 13.	1,000	2015. 4. 29.	2015. 5. 14.	-
36	2015	■■주식회사	2014. 2. 21.	1,630	2015. 4. 29.	2015. 6. 3.	2015년 10월 인천광역시 조사
37	2015	-	2014. 10. 17.	3,336	2015. 4. 29.	2015. 6. 8.	-
38	2015	-	2014. 2. 17.	5,503	2015. 4. 29.	2015. 6. 15.	-
39	2015	▽▼주식회사	2014. 9. 16.	4,305	2015. 4. 29.	2016. 4. 6.	2016년 인천광역시 통보로 실시
40	2015	주식회사▼▼	2014. 3. 24.	1,107	2015. 4. 29.	2015. 6. 5.	-
41	2015	-	2014. 7. 20.	4,996	2015. 4. 29.	2015. 5. 29.	-

연번	조사대상 선정연도	법인명 ¹⁾	취득일자	취득신고 금액 ²⁾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서면조사서 제출일	비고 ³⁾
42	2015	-	2013. 9. 17.	1,040	2015. 4. 29.	2015. 6. 5.	-
43	2015	■□주식회사	2014. 6. 30.	473,826	2015. 4. 29.	2015. 6. 5.	-
44	2015	-	2014. 8. 19.	4,210	2015. 4. 29.	2015. 7. 2.	-
45	2015	-	2014. 1. 13.	94,804	2015. 4. 29.	2015. 6. 5.	-
46	2015	△▲주식회사	2014. 8. 14.	75,139	2015. 4. 29.	2015. 6. 2.	2016년 인천광역시 통보로 실시
47	2015	-	2014. 12. 29.	167,352	2015. 4. 29.	2015. 6. 5.	-
48	2015	-	2014. 1. 21.	1,050	2015. 4. 29.	2015. 6. 8.	-
49	2015	-	2014. 12. 30.	139,095	2015. 4. 29.	2015. 6. 5.	-
50	2015	-	2014. 12. 26.	60,000	2015. 4. 29.	2015. 6. 3.	-
51	2015	-	2014. 1. 16.	1,048	2015. 4. 29.	2015. 6. 5.	-
52	2015	▷▶주식회사	2014. 9. 4.	6,280	2015. 4. 29.	2015. 6. 5.	2016년 인천광역시 통보로 실시
53	2015	-	2014. 12. 29.	3,861	2015. 4. 29.	2015. 5. 20.	-
54	2015	-	2014. 12. 22.	6,890	2015. 4. 29.	2015. 6. 3.	-
55	2015	-	2014. 12. 3.	12,240	2015. 4. 29.	2015. 6. 5.	-
56	2015	-	2014. 2. 3.	5,630	2015. 4. 29.	2015. 5. 20.	-
57	2015	-	2014. 8. 1.	139,262	2015. 4. 29.	-	-
58	2015	-	2014. 7. 16.	1,424	2015. 4. 29.	2015. 6. 5.	-

주: 1. 2014년 및 2015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법인 중 2018. 8. 21.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세무 조사를 실시한 법인과 인천광역시가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법인은 제외

2. 비고란에 서류 미등록으로 기재된 법인은 관련 서류가 없어 2018. 5. 18. 현재 서면조사 담당자가 해당 법인에 확인한 결과를 기재

3. 취득신고 금액은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